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위생처리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영향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조성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 나.조성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다.쓰레기위생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20조)
- 라.쓰레기위생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 검토의견

- 동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 의해 일정한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부지 확보와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동 제정조례안의 대부분의 규정은 법령에 위해 의무화 되어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령적합성과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5.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 ·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시행일 99.7.1>>

- 다만, 동 제정조례안의 명칭을 법령과 일관성을 두기 위해서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보다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
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